

문서번호	자치행정과-104779
결재일자	2015.8.6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85호

주 무 관	사회진흥팀장	자치행정과장	행정관리국장	부 구 청 장
송연석	안재용	신석용	유제환	전결 08/06 정연찬
협 조	복지정책과장 유재용			

# 2015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성과분석보고서



행정관리국  
자치행정과



#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성과분석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## I 관련 근거

- 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, 동법시행령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 분석
  - 『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성과분석』 기준에 의거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
  -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(서울시 경우) 및 지방의회 제출

## II 기금 운용 개요

- ☐ 설치근거
  - 지방자치법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  -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(1995. 8. 14)

- ☐ 기금운용 목적
  - 영세자영업자에게 기금을 융자하여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
  - 재난을 당하거나 긴급의료비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

- ☐ 기금 조성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## III 분석 결과

- ☐ 총 평
  -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영세자영업자의 사업개선자금 및 재난구호비·

2014년 운용현황		2014년도말 조성액	2015년 운용계획			비고
수입	지출		수입	지출	증감	
488	70	760	440	300	140	

간접의료비 등으로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음.

- 기금 재원은 용자회수금, 회수이자, 여유자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51명에게 902백만원을 용자지원하였으며.
- 사업계획 대비 사업실적 달성도는 2012년 97%, 2013년 83%, 2014년 16%로 매년 용자실적이 감소 추세에 있음.
- 용자대상이 영세자영업자나 저소득가구로 담보능력이 떨어지고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로 인해 실질적인 기금 이용도가 낮음
- 용자실적 향상을 위해 금융권의 금리 변동 추이와 타구 이율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 재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율하향 조정 검토할 예정임

## ■ 사업운영의 성과

- 사업비 최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(단위 : 백만원, %)

2013년도			2014년도		
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	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
440	366	83	440	70	16

-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

구분	사업계획	사업실적	달성도
2013년	○ 용자지원 사업 - 22명 440백만원	○ 용자지원 사업 - 21명 366백만원	83%
2014년	○ 용자지원 사업 - 22명 440백만원	○ 용자지원 사업 - 4명 70백만원	16%

## ■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

- 기금의 설치목적

설치근거	설치목적	주요사업내용	비고
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	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도모	- 영세사업자의 가계운영자금 융자지원 - 재난구호비, 긴급의료비 등 융자지원	

○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

-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융자금회수 및 회수이자,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을 통해 재원 마련
- 영세사업자의 가계운영자금, 재난구호비, 긴급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

**재원조성의 적정성**

○ 재원의 성격 및 규모

- 융자회수금 및 회수이자,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하며, 2015. 6. 30기준 기금의 규모는 1,702백만원임.

**향후 조치계획**

- 기금 융자에 대한 부동산 담보가 없을 시 신용보증서 제출 등을 적극 안내 하여 가용자금 최대 융자지원
- 기금 융자지원 홍보방안으로 구·동 주민센터 LED전광판, 구 홈페이지 등 보도매체 적극적인 활용

**IV**

**심의위원회 심의**

**심의일시** : 2015. 8. 5(수)

**심의방법** : 서면심의

**심의위원** :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 7명

○ 위원장 : 부구청장

○ 위 원 : 관계공무원 3, 구의원 2 (주)우리은행 동작구청 지점장

**심의안건** : 2015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성과분석

붙임 1. 201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성과분석보고서 1부.

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명단 1부.

3. 심의의결서 1부. 끝.